

개인정보처리방침(전자서명서비스/본인확인서비스) 개정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 제 8 조 <생략>			제 1 조 ~ 제 8 조 <좌동>			
제 9 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당행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 9 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당행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근거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존근거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존하는 개인정보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 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 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융,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 동 시행령 조항에 기재된 전자금융거래 기록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기록: 5년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종류를 말함)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2 조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융,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 동 시행령 조항에 기재된 전자금융거래 기록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기록: 5년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종류를 말함)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인정위원회 심사의견 반영: 보존근거 명확화

	<p>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p> <p>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한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p> <p>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p> <p>7.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8.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p> <p>-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기록: 1년</p> <p>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p> <p>2. 전자지급수단이 이용과 관련되는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p> <p>3. 전자금융거래법 제 8조에 따른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p>		<p>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p> <p>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한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p> <p>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p> <p>7.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p> <p>8.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p> <p>-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기록: 1년</p> <p>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p> <p>2. 전자지급수단이 이용과 관련되는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p> <p>3. 전자금융거래법 제 8조에 따른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p>	
<p>3.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조 ~ 제 14 조 <생략></p>		<p>3.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조 ~ 제 14 조 <좌동></p>		